

||| 목 차 |||

I. 일반개요	1
II. 김포시의 산업재해 현황	3
III. 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	4
IV.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5
V.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연락망	17
붙임	
1. 작업중지권 홍보 포스터(예시)	21
2.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22
3. 산업재해조사표 및 작성예시	23
4. 중대산업재해보고서(사업장 초동보고)	26
5.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27

가. 개념

○ (정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함

○ (목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대재해의 법적 개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① 사망자 1명 이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8호에 근거하여 “중대산업재해의 대응” 을 중점으로 작성

매뉴얼 작성의 근거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나. 적용범위

- (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범위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 24. 1. 27.부터 적용

- 사업 종류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자체도 적용대상
-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

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 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최근 3년간(19.~21.) 9건* 이었지만 올해(22년)에는 11건 [교통사고(6), 낙상(4), 질병(1)]** 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출퇴근 교통사고, 보행 중 넘어짐 등 생활 속 안전사고가 주 원인으로 파악

** 특히 3년간 교통사고의 횟수가 3건이었지만 22년 한해 6건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

- 시 현업 종사자의 올해(22년) 산업재해는 3건* 으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 2건이 계단 낙상사고, 1건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한 늑골 통증으로 작업 중 위험성으로 인한 안전사고보다 생활 속 안전사고가 주 원인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1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 적극적 신고 안내 영향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나. 김포시 산업재해 특징

- 19~22년 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없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위험물질의 취급, 중장비 등의 운영을 하고 있어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

- 현업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중장년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최근 발생 사고들의 대부분이 낙상사고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 설치나 낙상 예방교육 등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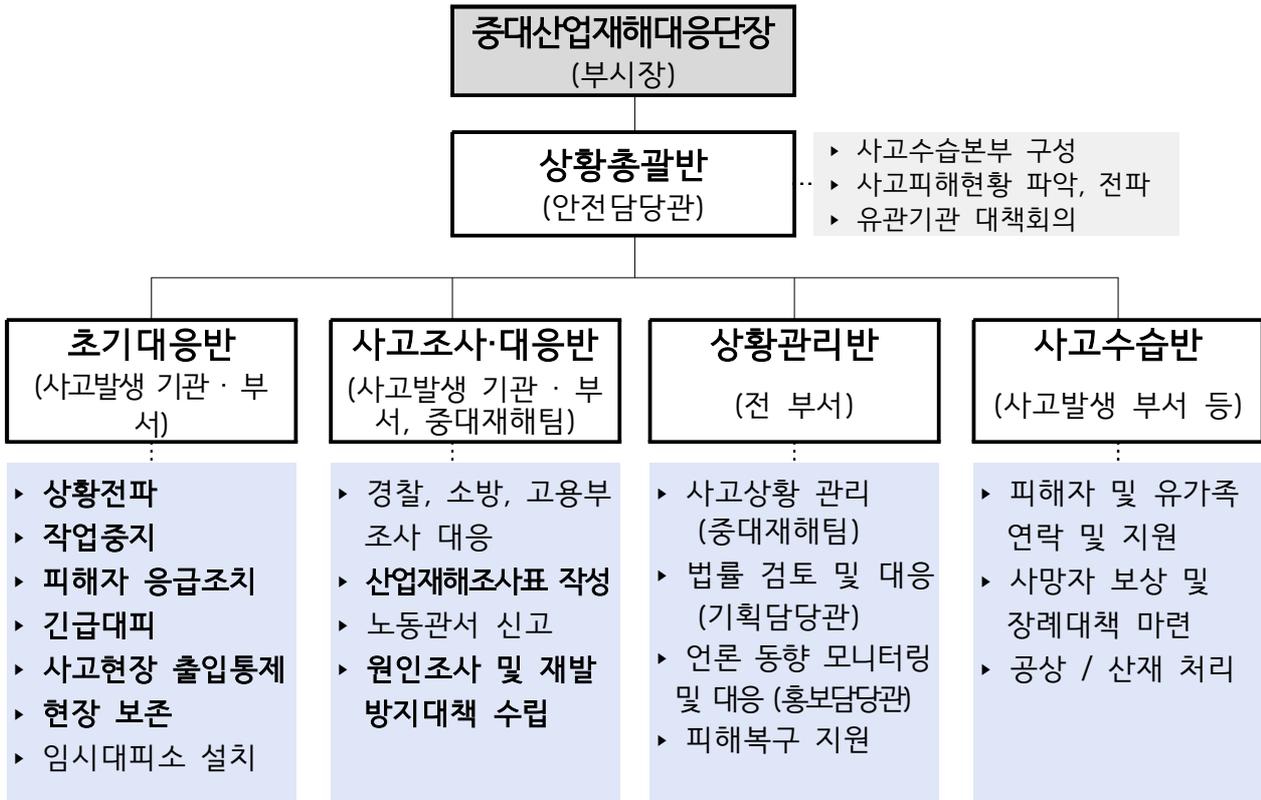
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

□ 비상조직(중대산업재해대응단^{가칭}-사고수습본부)을 통한 신속한 총력 대응

○ (구성시기) 시청 내 사고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질병 피해는 별도 판단,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사고는 사업장(부서)별 대응

○ 조직구성 및 역할



□ 재해발생 원인의 조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해당 사업장(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인적, 물적, 관리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 직업성 질병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 위험조사 등을 실시

□ 동일·유사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근로환경, 업무절차, 매뉴얼 등 개선, 종사자 추가 교육 및 사례 전파, 현장 순회 점검 지도

○ 사고 후유증(장애, 트라우마), 직업성 질병의 경우 종사자의 건강 상태 및 업무 특성 등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보직 변경 또는 전환배치 추진

IV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① 상황전파	○ 사고발생 전파, 주의 환기 및 119 신고	사고부서
② 작업중지	○ 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발견 시, 감독자 및 종사자 즉시 작업중지 ※ 평소 사업장에 홍보물(붙임1) 부착 등을 통해 작업중지권 안내	사고부서
③ 초기대응	○ 피해자 응급구호조치 ※ 건축물 붕괴 등 추가 위험이 있을 경우 직접 구호조치 예외 ○ 위험요인 제거(소화작업 등 확산차단 등) ○ 주변 출입통제 및 현장보존 ※ 사고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화	사고부서
④ 긴급대피 및 보고	○ 위험요인 통제 불가 시 긴급대피 ○ 임시대피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필요시) ○ (피해자 안전확보 후) 상황발생 보고 ※ 사고부서 → 중대재해팀 → 지체없이 관할 노동지청 신고	사고부서, 중대재해팀
⑤ 상황판단 및 대응	○ 중대산업재해대응단 가동 - 단원 소집 및 임무부여 등 ○ 중대산업재해대응단 판단회의 ○ 사고상황관리, 수습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단
⑥ 현장보존	○ 재해 발생 기록·보존 ○ 사고 발생시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화 ○ 출입금지 표시 설치 및 일체 접근 금지 ○ 응급구조활동 외 생산활동 등 일체의 업무 제한	중대산업재해 대응단
⑦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사실확인 → 재해원인파악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조사 대응(고용노동부, 경찰 등) ○ 피해복구 지원	사고부서, 중대재해팀

1. 지체 없는 신고·보고

- ◇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상황을 전파합니다.
- ◇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합니다.

□ 신속한 신고와 상황전파

- 최초 발견자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을 119에 즉시 신고
 - 신고자는 침착하게 현장의 주소, 부상자의 상황 등을 알림
- 범죄, 테러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시 112에 신고
- 긴급신고를 마친 후, 주변 작업자에게 위험상황을 전파함
 - ※ 큰 소리로 주변에 위기 상황을 알리며, 비상벨 등을 통해 위험상황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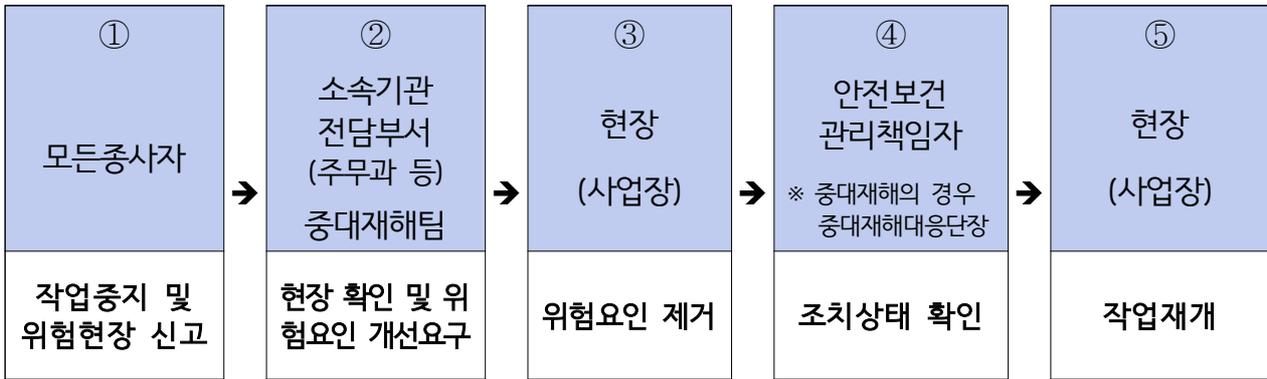
2. 즉시 작업 중지

- ◇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종사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합니다.
- ◇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합니다.

□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작업중지권’ 발동

- 감독자 및 모든 종사자는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 또는 중단을 요청함
 - 피해의 확산 우려가 없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신고자는 현장 안전점검을 요청(증빙사진 제출)
 -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
- 안전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파악 후 개선 요구
 - * 현업직원 관리감독자 등, 없을 경우 부서 자체적으로 안전담당자를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조치사항을 확인, 이상이 없을 시 작업을 재개
- 안전담당자는 작업 중지 요청 기록대장에 모든 중지 요청 건을 작성·관리
 - ※ [붙임 2] 작업중지 요청 기록 대장

<< 작업중지 절차 >>



작업 중지권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철저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확산 방지

- ◇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구조인력 및 장비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별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 주변의 위험성 여부 파악과 위험요인 제거 후 구조 및 대피해야 합니다.
- ◇ 모든 처치내용과 응급처치 사항을 기록하여 병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초기 응급조치

- 사업장 비상대응체계, 연락망, 비상대피로에 구급용구 (자동제세동기, 소화기 등) 위치 표시하여 게시
- 환자와 근로자의 안정성 등 현장 상황 파악
- 호흡정지 등의 위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처치 실시
- 주변 근로자에게 도움 요청 및 필요한 사항 구체적인 지시
- 모포나 체온 유지가 필요할 시 담요 준비 및 음료 준비*
* 부상이 심하여 수술 전 금식이 필요한 경우는 음료, 물 섭취 제한
- 현장관찰 및 증거물 파악(사진, 동영상 촬영 등), 현장 소지품 보존
- 모든 처치사항 기록 및 병원 이송 시 내용 전달

<< 주요 상황별 응급조치 >>

구 분	주요 내용
감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전원스위치 차단 · 구조자는 절연보호구 착용 후 감전 부위로부터 감전 재해자 분리 · 무의식, 호흡, 맥박시 기도확보 후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실시 · 골절 의심 시 부목 고정, 상처부위에는 소독거즈 조치 실시 ※ 감전으로 인한 화상은 의식이 있어도 몸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인에게 진찰 필요
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 징조시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비상벨(경보기 등) 작동 · 대피반을 중심으로 종사자를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 조치 · 전기나 가스시설 차단 및 중요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붕괴 위험지역에 안전띠 설치 등 현장접근 통제조치

구 분	주요 내용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 실시 및 전기 차단 · 건물 내(화장실 등) 내부 잔류자 유무 확인 ·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 · 닫힌 문의 손잡이의 온도 확인시 다른 문 이용 및 외부 도움 요청 · 건물 밖 대피시 미리 지정해 둔 재집결 장소로 이동 뒤 인원 확인 · 일반용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제외) 이용 금지 및 비상계단 이동
골 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 · 외피의 상처를 동반한 개방성 골절의 경우 지혈처치 우선 · 외상이 없는 폐쇄성 골절은 내부 출혈의 징후를 관찰 · 운반하는 동안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습포(얼음찜질) 실시 ※ 비상운반시 골절부위의 위, 아래를 전부 지지해야 함 · 병원에서 마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먹거나 마실 것 금지

□ 현장의 피해 및 위험요인 파악

《인명피해 파악》

- 사고 위치 파악 및 원인요인과 피해 정도 파악
 - 인명피해(부상자/사상자/부상 정도), 추가 요구조사 파악
 - ※ 의식, 호흡, 맥박, 출혈, 골절유무 등 확인
 - 사고 사업장의 구조·용도·규모 및 총 근로자 수 파악
- 사고 현장 구조인력(소방, 공무원, 유관기관 등) 동원 요청

《피해시설 및 위험요인 파악》

- 사고 주변 현장 피해시설 및 위험물 현황* 파악
 - * 해당 작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인적, 물적, 관리적 위해요소 파악
- 위험요인(가스, 전기, 상수도 등) 차단 및 긴급 안전조치 확인
- 사고현장의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

4. 신속 안전한 대피와 정확한 보고

- ◇ 안전담당자, 경찰관, 소방관 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며 추가적인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합니다.
- ◇ 안전담당자는 근로자 임시대피소와 응급 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 ◇ 사고발생 부서는 안전담당관 중대재해팀에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보고합니다.
(중대재해팀은 고용노동부 담당지청 산재예방과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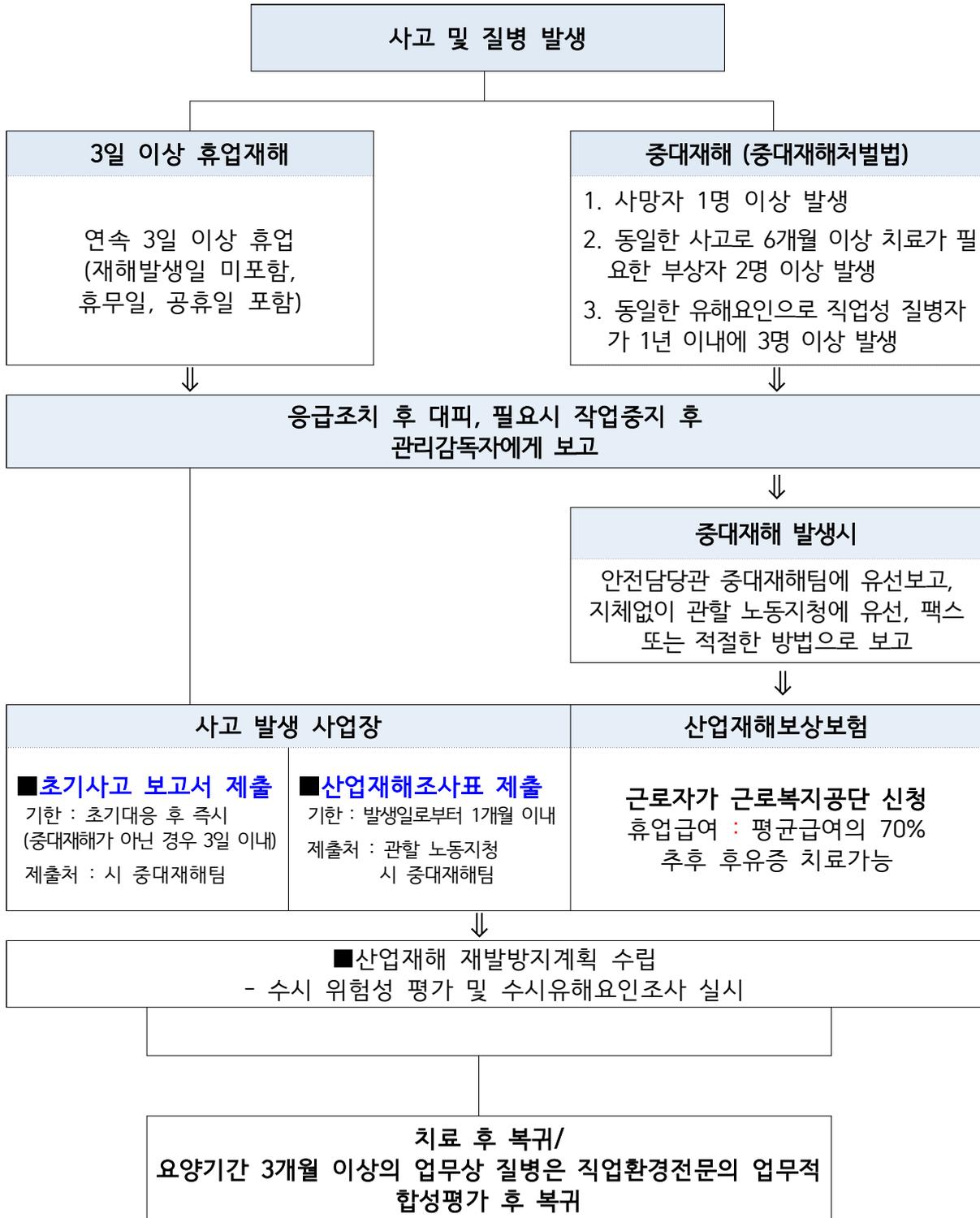
□ 신속한 피해자 대피 유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징후를 감지한 최초 발견자는 화재 경보기, 방송 등을 이용하여 사고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를 유도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차단, 2차 피해확산 방지
- 안전담당관 중대재해팀에 현재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
 -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선, SMS, 카카오톡 등으로 우선 보고
 - ※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

(상 시) 대피로 점검 및 대피소(대피장소)파악	- 대피로 숙지·교육(안내), 파손 여부 확인 - 임시대피소의 규모, 접근성, 적정인원, 장소 등 고려하여 선정 - 임시대피소/응급의료소의 기본 시설 및 필요한 사항 확인
(1단계) 대피경보 발령	- 사업장 내 대피경보 발령(사이렌, 방송 등)
(2단계) 대피인원 점검 및 피해 현황파악	- 종사자 대피인원 파악 및 부상 유무 확인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공간 확보(필요시)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진입 유도
(3단계) 상황보고	- 시청 안전담당관 중대재해팀으로 상황보고
(4단계) 시설안전점검 및 긴급복구	- 사고지역 접근 및 출입 통제 -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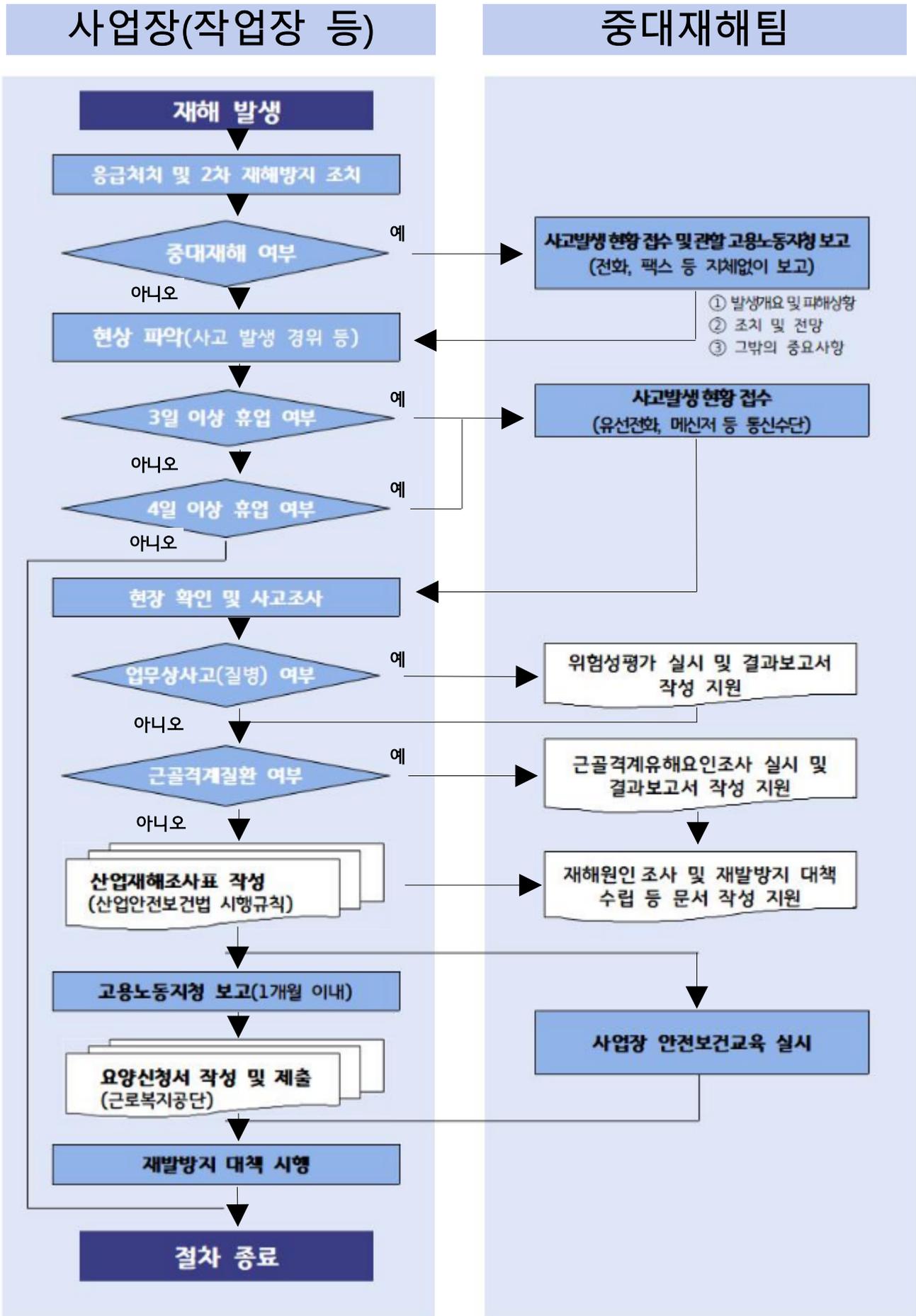
□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의 신고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미보고 시 과태료 700만원, 산재은폐 시 1년이하징역, 벌금 1,000만원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팀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전파



5.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 중대재해팀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대응단 가동여부를 결정합니다.
- ◇ 총괄상황반장은 현장상황을 중대산업재해대응단장에게 보고합니다.
- ◇ 중대재해팀은 근로자 임시대피소와 응급 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 ◇ 관련 사고수습대책기구와 협력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합니다.

□ 중대산업재해대응단 설치 및 운영

- 중대재해팀은 사고발생부서 또는 소속기관 전담부서(주무과 등)의 재해발생 및 초동대응 상황보고 등 자료를 수집
- 중대산업재해대응단 가동 필요성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 필요시 중대산업재해대응단^{가칭}을 가동하고 반별 임무 수행
 - 상황총괄반장은 즉시 현장을 파악 후 중대산업재해대응단장에게 보고

□ 임시대피소와 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중대재해팀은 소방 및 긴급구조기관의 도착 전까지 임시대피소와 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구호에 만전을 기함
- 소방, 경찰,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 후 이들의 지휘체계에 따라 대처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

□ 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대응현황 보고

- 유선으로 고용노동부 담당지청에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 24시간 운영
 - 재발방지계획의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 [붙임 3] 안전담당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

6. 사고 현장 보존

- ◇ 작업 중지와 동시에 종합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반드시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 ◇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현장정보 확보 및 출입금지 시행

- 안전담당자는 사고 원인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CCTV를 확보함
- 사고 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일체의 접근을 금함
- 사고현장은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활동 외 일체의 업무를 제한함

현장보존을 위한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 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수립·시행,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원인 조사와 방지대책 수립

- ◇ 사고 현황, 피해 현황 등 재해 사실을 확인 후 사고상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 재해 발생요인의 파악, 결정 등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 사고 원인조사, 사고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실시합니다.

□ 종합적 사고원인조사의 실시

- 원인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
- 원인조사자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 유지(2인1조 원인조사)
-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직접원인’ 과 ‘간접원인’ 으로 분류하여 조사

직접원인		간접원인	
사 람	불안전한 행동	기술적	시공 및 안전관리
물 체	불안전한 상태	교육적	법적교육 이수
기 계	불안정한 결함	관리적	감독자 정위치
시 설	불안정한 현장	기계적	장비작업계획서
환 경	불안전한 상황		

- 사고조사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

사고조사 원칙

1. 누가?



2. 언제?



3. 어떠한 장소에서?



4. 어떠한 작업 또는 업무를 하고 있을때



5. 어떠한 물체 또는 환경에



6. 어떠한 불안전 또는 불안정한 행동, 상태, 결함, 현장, 상황이 있었기에



7. 어떻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 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상황보고서 작성

※ [붙임 4] 사고상황보고서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보고

□ 사고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 원인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원인을 근거하여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유
- 근로환경, 업무절차, 매뉴얼 개선, 종사자 추가교육 및 사례 전파
- 사고후유증(장애, 트라우마), 직업성 질병의 경우 종사자의 건강 상태 및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보직 변경 또는 전환배치 추진

(1단계) 사실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 사진, 동영상, cctv, 인터뷰, 일지 등 파악
-----------------	---



(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물적	- 협착재해/추락재해/전도재해/기타재해
	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수칙, 작업절차 준수여부 - 작업중 무리한 동작 및 불필요한 행위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의 작업방법
	관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상태 - 안전검사 실시 상태 등



(3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



(4단계) 계획(대책)의 수립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

V

중대산업재해 대응 관련 비상연락망

가. 김포시 비상연락망

구 분	실·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본청	기획담당관	최세민	980-2055	980-2099
	시민협치담당관	황인영	980-2744	980-2750
	홍보담당관	장혜인	980-2061	980-2059
	감사담당관	이수민	980-2077	980-2029
	안전담당관	김연정	980-5494	980-2168
	행정과	김승태	980-2535	980-2539
	회계과	맹슬기	980-2721	980-2729
	정보통신과	한겨레	980-2079	980-2089
	민원여권과	김리현	980-2187	980-2900
	체육과	김예령	980-5787	980-2899
	일자리경제과	임성희	980-2277	980-2269
	기업지원과	김유진	980-2285	980-2299
	세무1과	이승환	980-2686	980-2719
	세무2과	황선화	980-2646	980-2719
	징수과	양희경	980-2547	980-2569
	문화예술과	이유민	980-2481	980-2479
	관광진흥과	배소희	980-5105	980-5119
	식품위생과	류승선	980-2235	980-2229
	복지과	윤지원	980-2620	980-2609
	교육청소년과	구명주	980-2580	981-7814
	노인장애인과	장연희	980-2207	980-2219
	여성가족과	고현아	980-5583	980-5579
	보육과	문지현	980-5324	980-5339
	환경과	강유진	980-2246	980-2239
기후에너지과	장문희	980-5367	980-5369	
환경지도과	김지연	980-5618	980-5669	

구 분	실·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본청	자원순환과	이현정	980-2767	980-2759
	공원녹지과	조소희	980-2345	980-2369
	하천과	이슬샘	980-5425	980-5449
	교통과	최지영	980-2466	980-2469
	대중교통과	김명주	980-5912	980-2849
	건설도로과	김예원	980-5189	980-2439
	철도과	이한나	980-5524	980-5524
	도시계획과	나혜연	980-2355	983-2359
	도시관리과	이혜주	980-5508	980-5519
	주택과	정유진	980-2407	980-2389
	건축과	송진우	980-2397	980-2869
	토지정보과	노경연	980-2145	980-2139
	종합허가과	최규현	980-5832	980-5879
	미래도시과	김현설	980-5006	980-5009
	공공건축과	김혜선	980-5045	980-5059
	스마트도시과	전예란	980-5083	980-5099
직속기관	보건행정과	천유경	5186-4005	5186-4129
	보건사업과	김태훈	5186-4123	5186-4188
	북부보건과	권정희	5186-4198	985-5054
	감염병관리과	백서운	5186-4023	5186-4099
	농정과	조원희	5186-4255	5186-4259
	축수산과	손동임	5186-4303	5186-4329
	농업진흥과	정세영	5186-4332	5186-4359
	기술지원과	이에론	5186-4365	5186-4399
사업소	수도과	권나현	5186-4404	5186-4409
	정수과	한영석	5186-4454	5186-4489
	하수과	강봉기	5186-4493	5186-4519
	클린도시과	이지현	5186-4525	5186-4529
	도로관리과	류효녀	5186-4563	5186-4569

구 분	실 · 과 · 소	담당자	전화	팩스
사업소	공원관리과	심진호	5186-4613	5186-4649
	시립도서관	박선영	5186-4652	5186-4689
	차량등록사업소	김정아	5186-4902	5106-4908
	도시안전정보센터	강동원	5186-4952	5186-4969
읍 · 면 · 동	통진읍	장예은	5186-3203	5186-3229
	고촌읍	이기택	5186-3253	5186-3269
	양촌읍	김영섭	5186-3304	5186-3319
	대곶면	윤인식	5186-3353	5186-3379
	월곶면	안재범	5186-3403	5186-3429
	하성면	류예나	5186-3454	5186-3489
	김포본동	최상진	5186-3505	5186-3529
	장기본동	정미연	5186-3554	5186-3579
	사우동	유난영	5386-3603	5186-3659
	풍무동	정주하	5186-3658	5186-3679
	장기동	김민지	5186-3704	5186-3729
	구래동	김소연	5186-3753	996-9884
	마산동	강혜진	5186-3802	982-5006
	운양동	고보경	5186-3855	5186-3879

□ 중대재해팀

- 공무원: 김태광(980-5491), 김민형(980-5495)
- 공무원: 이그린(980-5493), 서수정(980-5496)

나. 고용노동부

기 관 명	관할구역	전화
부천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천, 김포시	032-714-879 0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 관 명	관할구역	전화
경기중부지사	부천, 김포시	032-680-6500 (F.032-681-6513)

안전은 권리입니다

급박한 위험상황 **NO**라고 외치세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명확화됩니다!

이전

산업재해 발생 위험

↓
근로자 작업중지/긴급 대피 시
상급자에게 보고

↓
상급자의 조치

개정

산업재해 발생 위험 

↓
STOP 
근로자 즉시 작업중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법령 요지

-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노동국>

연 번	신고일시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내용	완료여부	처리자	비고
1							
2							
3							
4							
5							
6							

붙임 3

산업재해조사표 및 작성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원도급인 사업장명 수급인 소속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경우(건설업 제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 로자인 경우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업만 작성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 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재해 발생 개요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원인	재해발생원인	

IV. 재발 방지 계획	
--------------	--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기인물	□□□□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	
	작업지역·공정	□□□ □	
	작업내용		□□□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제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정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정소원 등]
-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 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넘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족,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절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붙임 4

중대산업재해 보고서(사업장 초동보고)

사고개요

- 누 가 : 기간제 / 무기직 근로자(청소) ○○○(00년생, 00세)
- 언 제 : 2022년 00월 00일(금) 00시 00분경
- 어 디 서 : ○○○에서
- 사고내용 :
- 부상정도 : 00주(의사초진 기준)
- 목 격 자 : ○○○(00년생, 00세)

사고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고원인

-
-

안전대책

-
-

붙임 5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 조리종사자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내 용	적정	미흡
1	넘어짐	적정한 보호구(미끄럼방지화 등)를 착용하는가?	
2		충분한 작업공간 및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3		바닥의 물기, 음식물 잔재물, 물호스 등 넘어짐 사고원인을 바로 제거하는가?	
4		작업시 서두르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하는가?	
5	화상	뜨거운 물체와 화염과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작업구역이 구분되어 있는가?	
6		뜨거운 물체를 다루기 전에 긴 장갑, 긴 앞치마를 착용하는가?	
7		가스의 사용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생활화하고 있는가?	
8	절단· 배임 등	식자재 적재시 적당한 높이(작업자의 가슴아래)로 적재하는가?	
9		냉동 식자재는 미리 해동 시킨 후 작업하는가?	
10		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한 작업시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 하는가?	
11		채소절단기 등 주방기기 청소 시 전원을 차단하고 청소 하는가?	
12	화재	소화기 및 소화전의 작동 및 사용방법을 아는가?	
13		화재발생시 소방 및 대피방법을 알고 있는가?	
14	근골격 계질환	쌀 등 무거운 식자재 운반시 이동식 대차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가?	
15		위험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는 안전표지판을 부착되어 있는가?	
16		무거운 물체 운반시 2인1조로 작업을 실시하는가?	
17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18		작업 전·중·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가?	

□ 청소원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내 용	적정	미흡	
1	넘어짐	적정한 보호구(미끄럼방지화 등)를 착용하는가?		
2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시 넘어짐 주의 경고표지판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도구나 자재를 수시로 정리하여 통로를 확보되어 있는가?		
4		청소후 바닥에 미끄러운 세제나 물기를 깨끗이 제거하는가?		
5	화학물질	화학물질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되어 있는가?		
6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하는가?		
7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8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의 구조물 청소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9		사다리 이용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10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하는가?		
11	베임.찰림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천천히 작업하는가?		
12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가?		
13	근골격계질환	쓰레기 등 운반시 이동식 대차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가?		
14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15		무거운 물체 운반시 2인1조로 작업을 실시하는가?		
16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17		작업 전, 중, 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가?		
18	기타	청소 책임자의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가?		

□ 건물관리업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내 용	적정	미흡	
1	넘어짐 등			
2				기계실 내부 공간이 비좁거나 통로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야간순찰 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 확보하고 있는가?
3				이동 시 넘어짐 사고원인이 되는 장애물 확인을 제거하는가?
4				위험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5	사다리 작업			
6				계단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명(조도)을 설치하였는가?
7	기계 점검 등 유지 보수			
8				사다리는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다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잡고 작업하고 있는가?
9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대 걸이 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가?
10				기계 점검, 보수 시 동력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작업하는가?
11				점검·보수 시 접근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가?
12	근골격계 질환 예방			
13				송풍기 벨트 등 동력전달 부분에 방호덮개 등 설치되어 있는가?
14				고장 난 승강기를 임의로 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는가?
15	밀폐공간 작업			
16				각종 계기류 확인 시 감전 예방을 위한 절연장갑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7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작업하는가?
18	밀폐공간 작업			
19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하는가?
20				교대 근무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가?
21	밀폐공간 작업			
22				작업장소에 산소결핍 및 밀폐공간장소를 보유하고 있는가?
23				정화조 점검과 같은 산소결핍 작업 시 측정장비 활용하며, 응급 연락체계 구축되어 있는가?
24	밀폐공간 작업			
25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와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가?

□ 조경 등 산림보호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내 용	적정	미흡
1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 *에 한하여 사용하는가?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써 전구 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2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였는가?		
3	사다리 작업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하는가?		
4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하는가?		
5	사다리는 2인1조로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하는가?		
6	파쇄기가 유지·보수 중이거나 작업 중이 아닐 때는 엔진 시동 열쇠는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작업자가 보관하는가?		
7	목재 파쇄기 등 절단날 교체 등 절단날 취급 시에는 엔진을 정지, 시동 열쇠 제거, 파쇄기의 작동 부위가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8	동력전달부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말릴 위험이 없는가?		
9	동력전달부에 작업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비상정지 버튼이 부착되어 있는가?		
10	다수 작업자가 동시 작업 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 유지하고 작업하는가?		
11	작업 중지 또는 이동 등 작업시간 외에는 반드시 엔진 정지 또는 이동 중 작업자 간 안전거리 유지하는가?		
12	예초기 칼날과 지면이 닿지 않도록 하고, 예초기 날의 각도는 5~10도, 높이는 10cm 내외로 유지하는가?		
13	예초기 날의 회전 방향이 좌측이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 실시하는가?		
14	경사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급경사지에서 작업 금지하고 있는가?		
15	개인보호구(헬멧, 안면보호구,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보호앞치마 등) 착용 하는가?		
16	작업 전 감염병(종류, 원인, 증상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준다.		
17	야외작업 야외작업 시 긴 소매, 양말을 착용하고, 필요시 기피제를 사용하는가?		
18	풀밭 위에 눕지 않고, 휴식 시 돛자리를 사용하는가?		

□ 도로의 유지·보수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적정	미흡
1	점검· 단속중 떨어짐 등 재 해 예방	과적단속원, 환경단속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		안전화, 호흡보호구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지도하고 있는가?	
3		점검시의 전원차단을 확인하는가?	
4		산소결핍등 장소 출입시 작업전, 작업중 환기 등 실시 확인하는가?	
5		작업(재출입 포함)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는가?	
6		산소결핍장소 출입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지급·착용 하는가?	
7		작업장 상황에 맞는 사다리를 사용하는가?	
8		사다리 등 작업시 2인1조로 작업하는가?	
9	근골 격계 질환	취급하는 중량물에 무게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10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성 주지 등 올바른 작업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11		작업전·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는가?	
12	감정 노동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가?	
13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14		근로시간외 근로자의 활동에 복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는가?	
15		고객응대근로자의 애로 및 고충의 해소와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16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직장 내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가 있는가?	
17	교통 사고	운전 중 주의 산만을 일으킬 만한 건강문제(현기증, 흉통, 두근거림 등)가 있는 경우 운행 중단 및 운전자 교체하고 있는가?	
18		교통법규, 교통신호준수, 승객 승하차 확인 등 안전운행 실시 등 교육을 하는가?	

□ 실험 · 연구보조원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내 용	적정	미흡	
1	넘어짐 등	통로는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는가?		
2		통로의 조명은 적절한가?		
3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고 있는가?		
4		각종 계기류 확인 시 감전 예방을 위한 절연장갑을 착용하는가?		
5	떨어짐	사다리는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다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잡고 작업하는가?		
6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대 걸이 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가?		
7	끼임, 갈림 등	트랙터, 파종기 등 농업기계의 회전축, 기어, 벨트, 체인 등 끼임 위험 부위에 덮개를 확인 및 설치했는가?		
8		농약 살포 시 독성에 의한 장애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9		농업용 기계나 장비 정비 시 전원을 차단하고 표지판 부착하였는가?		
10		경사, 작업지형·무게 등을 고려해 2인 이상 작업자가 함께 작업하는가?		
11	근골격 계질환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 시 신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12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자에게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안내표시를 하였는가?		
13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여 운반 작업을 실시하는가?		
14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빈도에 따라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15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는가?		
16	옥외 작업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15분 간격)?		
17		천막 등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18		응급상황의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주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가?		